

2010년도 사료정책방향

1. 2010년 사료가격 전망 및 대책

가. 사료가격 동향 및 전망

- 국제곡물가격은 '08년 10월 이후 곡물수급 개선, 환율안정, 및 유가하락 등에 따라 투자심리 위축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하향 안정세 형성
 - 지난 해에는 국제곡물가격, 해상운임 및 환율 등이 안정됨에 따라 6차례 걸쳐 33.3% 사료가격 인하
 - * 가격인하율 : 33.3%(2월 5%, 4/3.2, 5/5.5, 8/6.4, 10/7.9, 11/5.3)

- '09년 10월 이후에 구매된 곡물이 국내 도착(2월)하여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10년 상반기에 사료가격 인상이 전망됨
 - 업체별 매입가격 및 재고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옥수수 및 대두박 가격 상승으로 '10년 2월 중 5%내외 인상 예상
 - 옥수수 : ('08.12) 210 \$/톤 → ('09.12) 245 → ('10.3) 260
 - 해상운임 : ('08.12) 25 \$/톤 → ('09.12) 65 → ('10.3) 65

 - '10년 4월경에 환율이 1,10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사료가격 추가 인상이 불가피
 - 환율 : ('08.12) 1,374 원/\$ → ('09.9) 1,219 → ('09.12) 1,160
 - * 환율 1% 상승시 사료가격 0.6% 상승

 - 옥수수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많고, 유가 상승 요인이 있어 2010년 국제곡물가격 및 해상운임은 15%정도 상승 예상

안 규 정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나. 사료가격 안정 대책

【추진전략】

- 사료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사료업체에 대한 옥수수 등 수입 사료원료 할당관세 적용,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 확대하고,
 - 중·장기적으로 국내 조사료 생산 확대 및 부존자원활용 등 지속적으로 추진

【단기대책】

■ '10년 옥수수 등 수입 사료원료 할당관세 적용 : 10품목

- '10년 관세액 지원효과(추정) : 899억원

■ 사료업체에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확대

- 지원확대 : ('09) 500억원 → ('10) 600
- * 지원조건 : 금리 3~4%/연, 2년 일시상환

■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2.5조원)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 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예산 : ('09) 954억원 → ('10) 554
- * 지원조건 : 금리 1%, 소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돼지 기타 2년 균분상환

【중·장기 대책】

■ 청보리 등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

- (목표) 고급육 생산 및 사료비 절감 등을 위해 급여비율을 개선하고, 국내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추진

- 급여비율(조사료 : 배합사료) : ('07) 4 : 6 → ('12) 6 : 4

- 국내생산량(천톤) : ('07) 3,618 → ('12) 5,335(증 1,717)

- 재배면적(천ha) : ('07) 164천ha → ('12) 370(증 206)

● ('10년 중점추진계획)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예산 : ('09) 829억원 → ('10) 1,002

- 다수확 우량 조사료 품종 개발 및 보급 확대

* 청보리, 옥수수 등 보급 품종 다양화로 농가의 품종 선택폭 확대

- 하계 사료작물 재배확대를 위한 재배여건 강화

* 조사료 연중공급체계 구축 및 쌀 적정공급을 위한 사료작물 재배 확대

- 조사료 품질강화 및 사료용 벼짚에 대한 농약검사 실시

참고. 사료가격 관련 통계자료

1 국내 도착가격(수입실적기준)

(단위 : \$/톤, 천원/톤)

구분	'09.1	2	3	4	5	6	7	8	9	10
옥수수	298	248	203	185	221	217	204	207	207	222
(원화환산)	401	354	297	248	277	274	257	256	252	261
대두박	427	429	397	398	411	404	404	402	425	454
(원화환산)	575	613	580	534	516	509	510	498	516	533
소맥	366	365	330	154	253	231	170	171	171	170
(원화환산)	493	522	482	206	318	291	215	212	208	200

* () 내는 원화 환산금액임

2 환 율

(단위 : 원/\$)

구분	'09.1	2	3	4	5	6	7	8	9	10
환 율 (매매기준율)	1,346	1,429	1,462	1,342	1,255	1,261	1,262	1,238	1,215	1,174

3 배합사료 가격 변동(인상·인하)현황('07~'09년)

(단위 : %)

구분	'07	'08.1	3	5	7	10	12	'08 소계	'09.2	4	5	8	10	11
농협 사료	20	8.2	9.8	-	18.9	6.9	-	43.8	△5	△3.2	△5.5	△6.4	△7.9	△5.3
일반 사료	19	7.0	9.0	10	6.0	6.0	8.0	46.0	△4	△3~4	△3~5	△1.5~4	-	-

* 11월 5.3%인하 : 1개월간 할인('09.11.21~12.24)

4 배합사료 가격

(단위 : 원/kg)

축종별	'07.12	'08.12	'09.1	2	3	4	5	6	7	8	9	10
한육우	299	442	463	460	459	457	444	427	418	407	399	387
젖 소	341	494	506	510	502	505	496	477	477	461	467	452

2. 사료품질 및 안전성 강화 추진

가. 추진사항

■ 축산물에 항생제 등 잔류방지와 약제내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료내 혼합가능한 동물용 의약품의 종류를 감축

- (중전) 53 → ('05.5부터) 25종(△28종) →('09.1) 18(△7종)

■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사료내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관리대상 종류를 확대

- (중전) 8종(비소·불소·크롬·납·수은·카드뮴·아플라톡신B1·셀레늄)
- ('05.5부터) 12종(아플라톡신B2·G1·G2, 오클라톡신A 추가)
- ('08.10부터) 1종(멜라민과 그 복합체가 함유된 물질 추가)

■ 배합사료 공장에 대해 자율적인 HACCP 적용('05.1.1)

- 사료의 가공·포장·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관리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

- '09.12월 현재 전체 96개소 중 83.0%인 80개소에 대해 HACCP인증

■ 수입되는 동·식물성 박류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사료검사요령 개정('08.12.31)

* 멜라민을 사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고시 개정('08.10.31 시행)

■ BSE 관련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반추동물 사료 원료로 사용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유해사료 범위와 기준 개정('08.12.31)

* 기존에는 반추동물 사료에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 사용을 금지('00.12)

● 소 사료에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 등 동물성 단백질이 포함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행사항 점검 강화

- 분기별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점검 실시

● 수입되는 육골분 사료 및 사료원료에 대해 철저히 관리

- 광우병 발생국에서 생산된 반추동물 유래 육골분 수입 금지

- 광우병 비 발생국에서 생산된 육골분에 대해서도 수출국 증명서 확인 및 현미경 검사를 통해 반추동물 유래 육골분 포함여부 검사

나. 추진방향 및 대책

■ 사료품질 및 안전성 관리강화를 위하여 사료내 항생제를 '12년 까지 단계적으로 전부 감축하고, 사료공장에 대한 HACCP를 '12년까지 완료하고, TMR 공장에 대한 HACCP 적용 추진

■ 항생제 사용감축 등 항생제 내성균 저감대책 지속추진

● 사료 첨가용 동물약품 종류 감축 : ('08) 25종 →('09) 18→('12) 9

● '12년 까지 사료내 항생제(9종)을 단계적으로 전부 감축추진

■ 사료의 품질 및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사료공장에 HACCP 확대

● '12년까지 모든 배합사료공장에 대해 HACCP 지정 추진 및 지정 사료공장에 대해 운영상황 지속점검(연1회)

● '10년 상반기에 TMR 사료공장의 HACCP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반기에 TMR 사료공장 HACCP을 2~3개소 시범지정 추진

■ 사료품질 향상 및 안전성 교육 실시(5~6월)

- 교육대상 : 사료관련 업체 및 관계 공무원 등(연2회)

참고. 사료검정 및 검사기관 업무체계

■ 사료검사기관

- 시·도지사

- 현물검사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수입·판매하는 사료와 농가 등 수요자가 검사를 의뢰한 사료
- 서류검사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수입·판매하는 사료의 원료수불대장, 제품생산·판매대장, 자가품질검사 대장 등
- 사료의 검사 방법 : 사료 검사요령(고시 2006-74호)에 의하여 실시
- 사료 제조업·수입업 등록과 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는 법 제8조, 제11조에 의거 시·도지사가 함

■ 사료검정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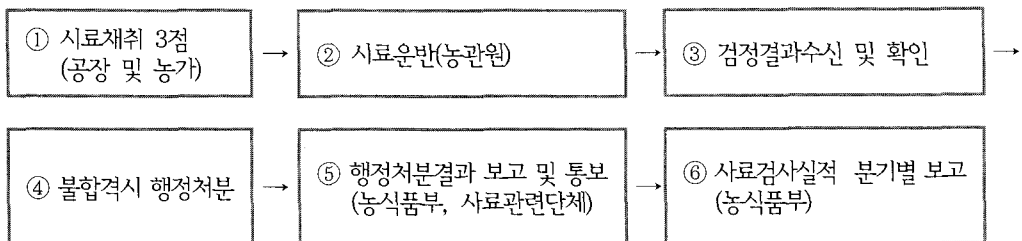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

- 사료검사기관(농식품부, 시·도)이 의뢰하는 시료의 검정

- 국립수산물과학원(양식사료연구센터)

- 사료 검사기관에서 의뢰하는 시료의 검정(어류용 배합사료 검사)

■ 사료검사체계(현물검사 기준)



- 채취한 3점중 농관원에 송부하는 1점외에 1점은 타사료검정기관(재검사시 활용)에 나머지 1점은 사료검사기관에서 보관
- 검정성분항목 5개 이내로 안전성관련성분이 3개 이상 ☒